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863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양지인, 조희연, 김윤우, 안지선, 이하윤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랑

담당변호사 김광희, 송병욱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3. E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1. 12.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528985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E 사이에 2018. 3. 12. 및 2018. 4. 27. 각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원고 B’라 한다)의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6. 5. 30. 피고 D과,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원고 B의 기명식 보통주 539,980주를 12억원에 매도하고, 원고 B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A은 2016. 7. 22. 피고 D과 피고 C를 상대로 위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 해제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621(본소), 2017나2042638(반소)]은 2018. 11. 15.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후 피고 D, 피고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E은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보유하던 원고 B의 주식 중 2018. 3. 12. 15,000주를 24,412,000원에 매수하고, 2018. 4. 27. 2,000주를 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원고 B의 주식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신고기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어떠한 과세정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B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 D,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약정 위약금 120,000,000원 및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 B의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며 입은 손해액 587,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상법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 120,000,000원 부분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 A과 피고 D, 피고 C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양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또 계약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D, 피고 C는 계약금으로 2016. 5. 30. 2,000만원, 2016. 6. 10. 1억원을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L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D,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에게 추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손해 30,000,000원 부분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은 시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 D, C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